

중소기업과 대형유통업체간의 거 래 실 태 조 사

1. 조사개요

☐ 조사목적

-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거래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
실적 점검
- 대형유통업체의 거래대금 지급실태조사결과 통보 및 불공정거래 5개
백화점에 대한 시정요구(99.10)
-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불공정거래관행 통보 및
시정요구(2000.4)

☐ 조사기간 : 2000. 7 .4 ~ 7. 13

☐ 조사대 상 : 6개(롯데 · 신세계 · 엘지 · 동양백화점, 삼성플라자, 중소기업유통센터)

☐ 조사방법 : 서면 및 현장조사

2. 조사결과

□ 납품대금 지급실태

○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현금 91.3%, 어음 8.7%

- 현금결제비율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98.5%로서 높고, 삼성플라자가 84.1%로 낮음

○ 납품대금은 대부분 법정기한 60일이내에 지급

- 납품대금의 60일이내 지급비율 : ('99. 1) 95.6% → (2000. 1) 98.8%

(단위 : %)

백화점명	60일이내 지급비율			비 고
	'99.1	2000.1	대기업 제외시 비율	
롯데	92.2	96.8	100	대기업 납품대금 지급지연 “
신세계	99.0	99.6	100	
엘지	97.5	97.8	99.9	
삼성플라자	89.5	100	100	
동양	99.8	99.6	100	법원의 납품대금 차압권 지급지연
유통센터	-	99.9	100	대기업 납품대금 지급지연
평 균	95.6	98.8	100	

□ 기타 불공정거래실태 확인결과

- 납품업체에 대한 광고비 등 비용부담, 판촉사원 파견요구, 수수료율, 계약서 작성실태 등을 확인결과 대형유통업체의 개선 노력이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음

<개선과제>

- 롯데백화점 : 의류 등 특정품목의 판촉행사시에 광고비를 참여업체가 전액부담토록 하고 있음(여타 백화점은 자체부담)
- 동양백화점 : 표준계약서를 대체하여 자체계약서식을 사용

유형별 거래사례 조사

- 광고 및 할인행사용 비용부담 요구
 -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비용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, 롯데의 경우 의류 등 특정품목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광고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이의 개선 요망
- 상품권 구매요구
 -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구매되고 있어 입증이 곤란함
- 매장 수리비 부담요구
 - 매장의 설계변경시 기본경비는 백화점이 부담하고,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특수인테리어는 입점업체가 부담함

○ 판촉사원 파견요구

- 판촉사원의 파견요구는 특정매입거래의 판촉수단으로 관례화되어 있음

※ 특정매입거래 : 상품을 백화점이 관리하며 판매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고, 재고품은 반품가능한 거래형태

○ 매입상품의 반품요구

- 백화점이 직매입한 상품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 등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, 특정매입 상품은 반품이 가능함

○ 계약서 작성미흡

- 일부 백화점에서 계약서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며
- 동양백화점은 법정권장서식인 표준계약서를 사용치 않음

○ 특정매입상품의 수수료율 인하요구

- 평균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16.6%~25%로서, '99년도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고려시 수수료율의 인하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

(단위 : %)

구 분	롯데	신세계	엘지	삼성플라자	동양	유통센터
평균수수료율	25	23.5	18.2	18.8	20	16.6
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율	1.2	1.0	△ 3.7	△ 3.7	△ 3.3	-